

電子·電氣製品의 外國 技術 導入 方法

김영훈 / 국제기술이전연구소 소장

1. 技術導入의 意義

가. 外資導入法上的의 技術 導入

技術導入契約이라 함은 大韓民國 國民 또는 大韓民國 法人이 外國人으로부터 工業所有權 기타 技術의 讓受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 代價의 支給을 對外 支拂手段에 의하고, 그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것으로, 단순하지 아니한 기술과 그 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용역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技術用役育成法上的의 技術 用役導入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한 技術用役이란 他人의 위탁에 의하여 高度의 科學技術을 응용하여, 事業 및 施設物의 計劃, 研究, 設計, 分析, 調查, 購買, 調達, 試驗, 監理, 試運轉, 評價, 諮問, 指導, 技術적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용역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그 代價의 지불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 外國換管理法上的의 用役 導入

外國換管理法上 國內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用役을 제공받는 계약의 締結을 한 경우에는 甲類 外國換銀行의 長의 認證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用役의 代價가 정액으로 美貨 1萬弗以下인 경우에 한한다.

2. 技術導入의 必要性

生産要素의 하나인 기술은 경제의 工業化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특히 經濟의 성장을 지속화시키기 위하여는 技術의 高度化가 절실히 요청된다. 技術의 高度化는 自主的 研究開發에 의하거나 外國의 先進技術을 도입하여 이룩될 수 있다. 그러나 技術의 自體開發은 開發能力이나 時間, 經濟面을 고려할 때에 상당한 부담이 뒤따르게 되어 스스로 技術을 개발하기보다는 外國技術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各國의 일반적인 추세다.

技術導入은 技術革新의 한 중요한 수단이며, 資本·勞動·技術과 같은 生産要素中 技術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슈페터」는 經濟發展에 있어서 技術革新을 강조하고, 革新(Innovation)에는 1)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製品의 제조 2) 새로운 生産 方法의 도입 3) 新市場의 개척 4) 原料 半製品의 새로운 獲得源의 점거 5) 獨占의 형성, 파괴 등과 같은 새로운 조직의 형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定義하고, 이는 경쟁적 資本主義 經濟下의 企業家 利潤追求 動機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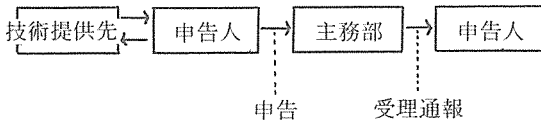
技術革新의 속도가 빠른 現代社會에서는 企業家가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에 응하여 製品을 市場에 공급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企業家는 그 이윤의 일부를 研究開發(R&D)에 投資하거나 이미 市場性이 있는 外國技術의 導入을 계획하게 된다. 이들의 動機는 1) 新製品, 技新術의 개발 2) 既存製品의 品質 및 性能 개선 3) 生産性의 증대 4) 輸入 代替 또는 輸出 增大 5) 既存業種과의 경쟁 등 營業적 動機에서 일어나게 된다.

3. 技術導入의 節次

가. 契約期間 1年以上인 技術 導入

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거 技術을 도입하고자 하는 者는 主務部長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政府의 外資導入政策이 점차 自由化政策으로 변경됨에 따라 技術導入政策도 그간 4次에 걸쳐 自由化措置가 취해져 종래의 認可制를 申告制로 전환하여 先進國의 尖端技術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현행 外資導入法上 技術導入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申告

技術導入契約을 신고하는 者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主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技術導入에 의한 事業計劃書
- ② 技術導入契約書 寫本(外國語로 작성된 경우는 國文翻譯文을 첨부)
- ③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類
- ④ 技術提供者의 國籍證明書
- ⑤ 技術導入者의 定款(法人의 경우)

2) 申告節次

技術導入契約을 締結한 者는 主務部長官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主務部長官은 ① 技術性 ② 契約條件 ③ 導入되는 技術이 外資導入法 第3條의 導入基準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고된 技術導入契約 및 事業計劃의 내용을 補充 또는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3) 申告受理 禁止

技術導入契約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主務部長官은 該當 技術導入 契約을 申告受理하여서는 안된다.

- ① 단순한 意匠, 商標의 사용 또는 獨占販賣權의 이용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② 原資材·部分品 또는 附屬品の 판매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③ 輸出制限條件 등 현저한 不公正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④ 導入하고자 하는 技術의 내용이 낮은 수준이거나 뒤떨어진 技術인 경우
- ⑤ 技術開發促進法 第8條 第2의 規定에 의하여 國產新技術製品의 제조자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경우에 그 보호받는 技術을 導入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科學技術處長官이 當該 技術導入의 금지를 主務部長官에게 요청한 경우에 限한다.
- ⑥ 다른 法令에 의하여 當該 技術의 導入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租稅의 減免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技術提供者에 지급하는 代價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는 申告受理된 날로부터 5年間 면제한다. 그러나 技術導入의 경우에도 技術提供者의 신청에 의하여 면제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 또한 外資導入法 第23條에 의거 허가된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外國人에 대한 勤勞所得稅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年間 면제되고 있다.

5) 技術導入 代價의 對外 送金

技術導入契約에 의한 代價는 送金當時의 申告受理된 내용에 따라 對外送金이 보장된다. 對外送金을 할 때에는 甲類外國換銀行의 長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나. 契約期間 1年未滿의 技術 導入

1) 認可申請

國內用役業者가 수행할 수 없는 用役業者를 外國用役業者에게 수행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科學技術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外國用役認可申請書 2通
- ② 事業計劃書
- ③ 用役契約書의 寫本
- ④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類
- ⑤ 用役을 提供할 者의 國籍證明
- ⑥ 用役을 提供할 者가 派遣할 技術者의 名單

2) 檢討事項

科學技術處長官이 外國用役 發注承認 申請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

- ① 國內用役業者에 의한 遂行業務
- ② 外國用役業者 活用の 필요성
- ③ 外國用役業者 選定の 타당성 여부

3) 用役審議委員會의 審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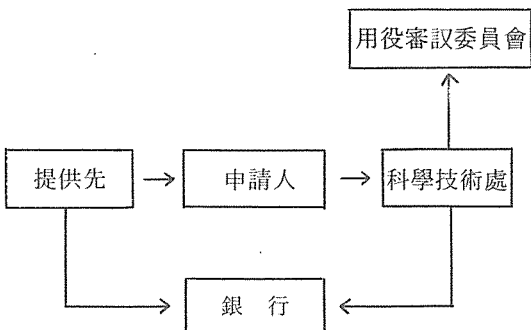
科學技術處長官은 外國用役 發注承認 申請에 대하여 用役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승인을 하는데, 그 일부 또는 條件付로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主務部長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用役代價의 送金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승인을 받은 技術用役契約의 代價는 甲類 外國換銀行의 長의 認證을 받아 송금한다(外國換管理法規定—18項).

5) 節次

現行認可 절차는 다음과 같다.



4. 技術導入契約 체크 리스트

- 가. 契約製品의 定義 (Definition)
- 나. 實施權의 許與範圍 (Grant of Right)
 - 獨占實施權 (Exclusive License)
 - 非獨占實施權 (Non-Exclusive License)
 - 輸出權 (The Right to Export)
 - 再實施權 (Sub-License)
- 다. 技術指導 (Technical Guidance)
 - 招請技術者의 資格, 人員, 滞在期間
 - 日當 (Per Diem), 月給 (Salary)
 - 交通費 및 生活費
- 라. 技術訓練 (Technical Training)
 - 派遣目的
 - 時期, 人員, 期間
 - 其他 費用
- 마. 租稅公課 및 減免 申請
 - 韓國內에서 부과하여야 할 稅金
 - 租稅 減免 申請如否 확인
- 바. 準據法 (Governing Law)
 - 國內法
 - 第3國法
- 사. 仲裁 (Arbitration)
 - 仲裁機關 (Arbitrating Organization)
 - 開催地 (Place to be held)
- 아. 保證 (Guarantee, Warranty)
 - 品質 (Quality) 性能 (Performance)
 - 技術 하자 (Technical Defects)
 - 特許侵害 (Infringement)
- 자. 義務 (Obligations)
 - 秘密維持 (Observation of Secrecy)
 - 契約 終了後의 義務 (Cease-use)
- 차. 早期 終了 (Termination)
 - 早期 終了의 조건 및 방법
- 카. 代價 (Consideration)
 - 先拂金 (Initial Payment)
 - 經常 實施料 (Running Royalty)